

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

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대상자에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발송하였으나 당사자 부재 및 연락 미수신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.

2024. 6. 26.

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장



- 건 명: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
- 근 거: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4항, 제29조제1항제6호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
-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

연 번	성명	생년월일	서류의 명칭	서류의 주요 내용			송달불 능사유	주소
				예정된 처분의 제목	처분사유	처분하고자 하는 내용		
1	윤O현	1998.6.12.	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	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및 취업 지원 종료	정당한 사유 없이 2회에 걸친 출석통지에도 응하지 않음. 1차 출석통지: 24.5.29. 2차 출석통지: 24.6.5.	○ 수급자격 인정 철회 및 취업지원 종료 처리 ○ 처분일로부터 3년간 국민취업지원제도 재참여 제한	폐문, 부재	서울특별시 마포구 성미산로 157-11 (연남동) 1층

4. 공고기간: 2024.6.27. ~ 2024.7.12.(15일간)

5. 기타사항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 서울서부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팀 이규정(Tel. 02-2077-3351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